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98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박성민·김장겸·서일준

김상욱 · 김미애 · 엄태영

김기현 • 백종헌 • 김성원

박준태・김 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를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은 사회·교육"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저출산대응기획부

제42조를 삭제하고,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저출산대응기획부)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0]	법	제28조에	저출산대응기획
규정된 사무						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٥]	법	제28조에	저출산대응기획
규정된 사무						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저출산대응기획부	
여성가족부	저출산대응기획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저출산대응기획부장 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저 출산대응기획부장관의 행위 또는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에 대한 행 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저출산대응기획부
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	<u> 장관</u>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 ② (생	제19조(부총리)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③
<u>교육부장관</u> 이 각각 겸임한다.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⑤ <u>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은 사</u>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	<u>회·교육</u>
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생략)

<신 설>

2. ~ 15. (생략)

16. 여성가족부

17. ~ 19. (생략)

② · ③ (생 략)

<u><신</u>설>

<u>제28조</u>(교육부) (생 략)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 략)

제30조(외교부) (생략)

제31조(통일부)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출산대응기획부

3. ~ 16. (현행 제2호부터 제1 5호까지와 같음)

<삭 제>

17. ~ 1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저출산대응기획부) 저출산 대응기획부장관은 저출산・고 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 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 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 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제29조(교육부)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30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행 제29조와 같음)

제31조(외교부)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2조(통일부)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3조(법무부) (현행 제32조와 제32조(법무부) (생략) 같음) 제34조(국방부) (현행 제33조(국방부) (생략) 제33조와 같음) 제34조(행정안전부) (생 략) 제35조(행정안전부) (현행 제34조 와 같음) 제35조(국가보훈부)(생략) 제36조(국가보훈부) (현행 제35조 와 같음)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생 제37조(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제 략) 36조와 같음)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생 략)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제 37조와 같음)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생 제39조(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제 략) 38조와 같음) 제39조(보건복지부) (생략) 제40조(보건복지부) (현행 제39조 와 같음) 제40조(환경부) (생략) 제41조(환경부)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1조(고용노동부) (생략) 제42조(고용노동부) (현행 제41조 와 같음)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 <삭 제> 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